

|       |             |
|-------|-------------|
| 의안번호  | 2207161     |
| 의 퇴 인 | 정태호 의원      |
| 회 답 일 | 2025.01.17. |
| 추계번호  | 24C6401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sup>1)</sup>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9조의2<br>(고등교육 공유·협력의 기반 조성) |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각 기관이 보유한 시설·인력 등을 공유하며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의 공유·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의무규정 |
|    |                                |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공유·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재량규정 |
|    |                                |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유·협력 기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무규정 |

##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 연번 | 조·항(조제목)                       | 미첨부 근거 규정                                          |
|----|--------------------------------|----------------------------------------------------|
| 1  | 안 제9조의2<br>(고등교육 공유·협력의 기반 조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보유한 시설·인력 등을 공유하며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의 공유·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시행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1) 안 제25조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사업에 ‘세계시민교육’을 추가하였으나, 현재 아태교육원은 세계시민교육 전문유네스코 카테고리2기관으로 세계시민교육 사업을 지속하여 추진중(자료: 교육부)이므로 추가재정소요로 계상하지 않음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공유·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실시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참고로 '24년 9월 다수 대학 등이 교사와 지원시설(도서관·학생식당·기숙사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융합교육과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국내 최초의 캠퍼스 모델 '세종 공동캠퍼스'의 개교기념식이 개최됨<sup>2)</sup>
  - 해당 캠퍼스에는 임대형(서울대·KDI·충남대·충북대·한밭대)과 분양형(충남대·공주대·고려대 세종캠퍼스)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되고 있으며<sup>3)</sup>, 공동캠퍼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익(재단)법인인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가 설립되어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해당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2025년 12억 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sup>4)5)</sup>, 지방자치단체도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을 실시함

□ 다만, 현시점에서 개정안 시행 후 학교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공유·협력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역 등을 예상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이 시행되어 학교 등의 공유·협력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이의 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기관간 예산 분담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현시점에서 구체적 소요비용을 추정하기 곤란함
- 이에 개정안은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여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도자료 참조(2024.09.25.)

3) 임대형 캠퍼스는 LH가 건물을 건립·기부하여 운영법인이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분양형 캠퍼스는 LH가 부지를 조성·분양하여 입주 기관이 교사 시설을 건립하는 형식으로 진행됨(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년 예산 사업설명자료)

4) 공동캠퍼스 개교로 공익법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위한 1,257백만원의 기관운영출연금과 대학본부로서 역할확대를 위한 교육지원·홍보 등을 위한 사업출연금 6백만원으로 구성됨(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년 예산 사업설명자료)

5) 참고로,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대학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활용, 학술정보자원 공동활용 협력체계 구축 등을 실시할 예정임(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도자료, 2024.7.)

### Ⅲ. 부대의견

□ 없음

### Ⅳ. 작성자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사회비용추계과 | 정혜승 | 이진우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정혜승 | 02-6788-4627 | hs0387@assembly.go.kr |